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3의5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정수장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수장 평면도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그 밖에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평가를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단, 서류평가로 현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정수장 위생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별지 제6호의9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재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 인증기준·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5]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제22조의6제1항 관련)

1. 인증기준: 정수장 위생관리 분야와 수돗물 안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정수장 위생관리 분야: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정수장 위생관리 분야의 평가항목 중 0점을 취득한 평가항목이 없어야 함.

나. 수돗물 안전관리 분야 : 평가항목별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10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일 것.

2.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분야	평가항목
1. 정수장 위생관리	가. 정수처리구역 구분(일반구역, 청결구역) 및 업무지원시설과의 분리 적정성
	나. 정수장 내 옥외 공간의 유충 서식환경 제어
	다. 취수장 및 일반구역(혼화·응집지, 침전지)의 유충 유입방지
	라. 침전지의 정기적 청소, 슬러지 제거 등 위생관리
	마. 청결구역(여과지, 활성탄흡착지, 정수지 등)의 밀폐 및 유충 유입방지
	바. 청결구역 내 격벽(또는 개폐식 덮개) 설치 및 유충 유출방지
	사. 청결구역의 시설물(조명설비 포함) 위생관리
	아. 청결구역의 개인 위생관리
	자. 원수 유입부 및 정수장 내 유충의 정기 모니터링
	차. 배출수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위생관리
2. 수돗물 안전관리	가.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나. 정수처리기준 준수
	다.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준수
	라. 수처리제 품질관리의 적정성
	마. 수질자동측정기 검·교정 실시의 적정성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의 적정성
	사. 탁도, 소독능에 대한 한계기준 설정 및 이탈 시 대응 적정성
	아. 여과시설 여재 구성 및 (역)세척 실시의 적정성
	자. 청결구역 유출부와 급수구역에서의 유충 미발생
	차.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여과수 탁도 수질기준 설정 및 달성도

비고: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정수장 위생안전 [] 인증 [] 재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기관	명 칭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신청대상 정수장	시 설 명(시설용량 : m ³ /일)	전화번호	
	시설소재지(상세주소)		
	처리공정		
	운영부서 및 담당자	사용(가동)개시일	

「수도법」 제33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제4항·제9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1. 정수장 평면도	수수료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수도법 시행규칙」	
	3. 그 밖에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일반수도사업자	→ 접수 인증기관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평가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인증번호 : KWWA-TT-0000-0000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1. 수도사업자명:

2. 정수시설명:

3. 소 재 지:

4.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도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제7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1. 최초인증일 : 0000. 00. 00.
2. 정기점검기한 : 0000. 00. 00. ~ 0000. 00. 00.
3. 재 인 증 일 : 0000. 00. 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6(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3의 5와 같다.</u> <u>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정수장을 말한다.</u> <u>③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④ 신청기관은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 제출해야 한다.</u> <u>1. 정수장 평면도</u>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그 밖에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평가를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단, 서류평가로 현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정수장 위생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별지 제6호의9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재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세무 인증기준·절차·수
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